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2. 8.>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진 (남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성명 (한글)	성명 (한자)	사진 (여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거주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신청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	[] 주민등록기관 방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운 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담당 공무원	통장 · 이장	가족	증명 가능 서류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시·도)	연락처
	(시·군·구)	

읍 · 면 · 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원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평면	왼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cm × 세로 5.5cm)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cm × 세로 5.5cm)	오른손 엄지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수수료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없음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중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하면, 본인의 주민등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가족 등)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 기일 내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92조).	

작성 방법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 칸과 ‘증명 가능 서류’ 칸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3. ‘통장·이장’ 칸과 ‘가족’ 칸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만 작성하는 칸입니다. ‘가족’ 칸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